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개정안은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이었는데,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14제3호 중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 ----- ----- ----- ----. ----- ----- ----- -----.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 <u>6개월 이상</u> ----- -----	3. ----- ----- <u>3개월 이상</u>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710
----------	------

제출연월일 : 2024. 10. 16.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현행법상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개정안은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이었는데,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함(안 제15조의14제3호).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4제3호 중 “1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u>1개월 이상</u>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3개월 이상</u> ----- -----